

# 농장경영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김 창 일  
공인회계사

## 1. 서론

우루과이라운드의 충격으로 농가가 더욱 깊은 시름속에 잠기게 된 이때에 또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의 달이 되었다. 지난 일년간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주먹구구로 따져보더라도 별로 타산이 맞지 않았거나 손해만 보았다고 느끼는 농가도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련 세무자료를 잘 정리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농가는 없어야겠다. 농장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인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부정리를 하고 있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의뢰하

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느 경우든 이번달의 총수입금액 신고에 따른 예상세금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실제보다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개인기업 형태로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법인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 법인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사업자중에는 개인기업이 더 편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 법인기업 형태로 영위하는 것과 개인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개인기업과 법인가업의 차이점

### (1) 설립과 폐업의 차이점

개인기업은 농장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기타 부대비용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가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준비해야 될 준비서류가 많고 상당한 시간과 부대비용이 소요되게 되며 최소 오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설립하여 운영하던 농장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개인기업은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되나 법인의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법인의 인격이 소멸되는데 이 때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하겠으나, 법인가업의 경우 그 자체가 개인사업주와는 별개의 인격체로 태어나고 자체자산으로서 대외지급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법취지때문에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 (2) 운영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의 생활근거가 되고 그 성격상 가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시에 기업의 성패는 사업주 개인의 수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회사업무 집행시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좌우되며 그

최종결과는 사업주 개인에 바로 귀결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당연히 아무런 절차없이 개인사업주에 귀속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반면에 법인은 출자자인 주주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거쳐야 유효한 것이 많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개인기업과는 달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내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결산결과 경영성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금이나 사내적립 등으로 처분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주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며 자신의 개인재산까지 처분해서 법인부채상환에 충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은 그 자체의 결산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며 출자자가 이익을 배당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가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그 설립이나 운영면에서 복잡하기는 하나 어느정도 규모이상의 농장사업주가 법인기업형태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이해된다.

#### 가) 대외신용도의 제고

일반적으로 소정의 불입자본금을 가진 법인가업은 그 대외지급 능력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양호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가 법인가업은 그 자체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 나) 절세기대효과

법인기업형태를 선호하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로서 동일소득 금액에 대한 세율이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기 때문인데 이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예를들어 결산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법인기업일 경우는 20%의 세율로 2,0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3,78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 3. 세무상의 차이점

아무래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판단의 중요기준은 역시 세무상의 차이점일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 (1) 개인기업

농장을 개인기업형태로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에 수입금액신고서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면신고와 추계 신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면신고란 기장된 장부에 의거 결산을 하고 이에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추계신고란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수입금액 대비 일정율의 소득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등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들 내용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수준이 45~50%(1992년 귀속의 경우)에 달해도 탈세혐의가 없는 한 정부에서는 신고된 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조사 후 소득세를 결정하므로 수입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예상세액을 알아보니 실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자는 향후 기장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구한 뒤 증빙을 갖추어 기장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세무서에서 기장의무통지를 받고도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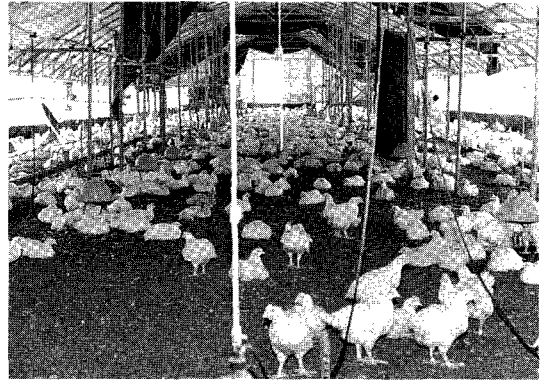
그리고 증빙에 의하여 실제결산을 해 본 결과 소득금액이 정부에서 서면신고기준으로 정한 45~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실사신청을 하여 관찰세무서의 실제조사를 거친 뒤 실제경영성과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기업의 경우에 무조건 서면신고기준을 이상으

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서면신고기준을 이상 신고했다하여 무조건 그대로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무자료거래가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경비 등이 많이 계상되었거나 지출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실사과정에서 이들이 적출되어 오히려 장부가 없이 추계과세받는 경우보다 더많게 과세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기업의 소득세 과세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며 원칙적으로 신고후 1년이 지나면 탈세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되지 않는 한 세무문제는 그때그때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법인기업

개인기업주의 소득세는 정부결정과 세제도입에 비하여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기업에서와 같은 서면신고기준도 없고 반드시 장부에 의거 결산을 해서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뒤 탈루된 세금이 있으면 추징을 하고 소득세에서의 서면신고기준을 미달신고하에 대한 실지조사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기적으로 실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기업으로 영위시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 외에도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주주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주식소유 내용을 변경조정하면 납부세액의 다소를 떠나 양도소득세 신고문제가 발생하고 주식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을



통한 변칙증여 등은 강력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된다.

## 4. 결론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조직형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세무문제만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법인으로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의 노출이라는 변수를 추가시켰고, 농축산물 시장개방은 향후 농장경영환경에 대한 안정적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농축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야 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효과적이고도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농장마다 특수한 사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종 의사결정전에 반드시 알고있는 관계전문가에게 충분히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양 14**